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5. 10. 20.

행정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5년 10월 7일

나. 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10월 8일

라. 상정일자 : 제19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(2015.10.19)

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김갑수)

가. 제안이유

○ 민선6기 구정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경쟁력 있는 조직기반 마련을 위해 주요 시책 기구를 신설하고 업무를 조정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 · 운영하기 위해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 제3조(정원책정기준)제2항의 별표 2에서
 - 연구직공무원(연구사) 비율: 100% 이상 → 0%
- 조례 제4조(직급별 정원)의 별표 3에서
 - 일반직공무원 5급 : 61명 → 62명 (증 1명)
 - 연구직(기록연구사) 6급 : 1명 → 0명 (감 1명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김기영)

- 본 개정조례안은 신속한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재난안전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인력증원과 기록물 관리·보존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 인력을 현황에 맞게 임기제 정원으로 대체하려는 것임.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원 총수는 1,302명으로 변동이 없으며, 신설부서(가칭 '도시안전과')에 5급 일반직 공무원 1명을 증원하고 기록물 관리·보존 관리부서(기획예산과)의 연구사 정원을 1명 감축하는 내용임.
- 구민의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실행 중심의 재난안전 조직체계 구현을 위하여 행 정자치부의 "기준인건비제" 범위에서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써
- 2014년 3월 개정된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인건비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원을 운영할 수 있으며, 행정자치부가 영등포구에 제시한 2015년도 기준인건비 산정액은 총 1,099억 원이고, 영등포구 인건비 편성액은 총 1,047억 원(기준인건비의 95% 수준)으로써 추가적인 인건비 소요 예상액이 8백만 원임을 감안할 때 개정안에 따른 인력조정 이후에도 구의 총 인건비는 기준인건비 내에서 별다른 재정적인 문제없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제 83 호 제출연월일: 2015.10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민선6기 구정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경쟁력 있는 조직기반 마련을 위해 주요 시책 기구를 신설하고 업무를 조정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·운영하기 위해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3조(정원책정기준)제2항의 별표 2에서

1) 연구직공무원(연구사) 비율: 100% 이상 → 0%

나. 조례 제4조(직급별 정원)의 별표 3에서

1) 일반직공무원 5급 : 61명 → 62명 (증 1명)

2) 연구직(기록연구): 1명 → 0명 (감 1명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: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13조

나. 예산 조치 : 별도 조치 필요

- 5급과 6급의 인건비 차액 8.255천원

(단위 : 천원)

구 분	5급 29호봉(직원5급 평	[균호봉)	6급 27호봉(직원6급 평균호봉)		
본 봉	4,335,991원×12월	52,032	3,716,961원×12월	44,604	
정근수당	52,032천원/12×0.96	4,163	44,604천원/12×0.96	3,569	
정근수당가산금	130,000원×12개월	1,560	130,000원×12월	1,560	
관리업무수당 (초과근무수당)	52,032천원×9%	4,683	10,331원×67시간× 12월×86.57%	7,191	

구 분	5급 29호봉(직원5급 평	[균호봉)	6급 27호봉(직원6급 평균호봉)		
정액급식비	130,000원×12월	1,560	130,000원×12월	1,560	
명절휴가비	52,032천원/12×120%	5,204	44,604천원/12×120%	4,461	
연가보상비	52,032천원/12/30 ×0.86×10일	1,243	44,604천원/12/30 ×0.86×10일	1,066	
직급보조비	250천원×12월	3,000	155,000원×12월	1,860	
성과상여금	52,032천원/12×110%	4,770	44,604천원/12×110%	4,089	
합계		78,215		69,960	

다. 합의 사항

(1) 규제심사 : 심사실시(대상사무 없음)

(2) 부패영향평가 : 평가실시(원안 동의)

(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실시(원안 동의)

라. 기타 사항

(1) 입법예고(2015.9.10.~9.30, 20일간) 결과 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 2와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2]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

1. 일반직공무원

구 분	4급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	전문경력관
비 율	1%이내	6%이내	21%이내	33%이내	31%이내	7.5%이상	0.5%이내

비 고 :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.

2. 연구직공무원

구 분	연구관	연구사
비 율	0%이내	0%

3. 별정직공무원

구 분	5급상당 이상	6급 상당	7급 상당	8급 상당	9급 상당
비 율	0% 이내	30% 이내	55% 이내	15%	이상

비 고 :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.

[별표 3]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

					I		
직급별	기관별	총계	본청	구의회 사무국	보건소	뇽	
	총 계	1,302		1,3	02		
	정무직	1		1			
Q	일반직 계	1,297		1,2	97		
	3급	1	1	_	_	_	
일	4급	7	5	1	1	_	
 반	5급	<u>62</u>	<u>31</u>	2	11	18	
- ^인 - 직	6급 이하 소계	1,225		1,225			
'	전문경력관 소계	2		2	·		
ਸ਼੍ਰ	결정직 계	4		4			
6급	· 상당 이하	4		4			
연구직 계		<u>0</u>	<u>0</u>				
	연구사	<u>0</u>		<u>C</u>	<u> </u>		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■ 조례 제3조 [별표 2]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

행

1. 일반직공무원

구분	4급 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	전문 경력관
비율	1%이내	6%이내	21%이내	33%이내	31%이내	7.5%이상	0.5%이내

비 고 :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.

2. 연구직공무원

구 분	연구관	연구사	
비 율	0% 이내	100% 이상	

3. 별정직

구분	5급상당 이상	6급 상당	7급 상당	8급 상당	9급 상당
비율	0%이내	30%이내	55%이내	15% 이상	

비 고 :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

개 정 안

1. 일반직공무원

구분	4급 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	전문 경력관
비율	1%이내	6%이내	21%이내	33%이내	31%이내	7.5%이상	0.5%이내

비 고 :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.

2. 연구직공무원

구 분	연구관	연구사	
비 율	0% 이내	0%_	

3. 별정직

구분	5급상당 이상	6급 상당	7급 상당	8급 상당	9급 상당
비율	0%이내	30%이내	55%이내	15% 이상	

비 고 :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.

■ 조례 제4조 [별표 3]

현 행						개 정 안							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					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							
기관별 직급별		총 계	본청	구의회 사무국	보건소	동	직급	기관별 별	총 계	본청	구의회 사무국	보건소	동
총 계		1,302	1,302					총계	1,302	1,302			
정무직		1	1					정무직		1			
일반직 계		1,296	1,296				-	일반직 계		1,297			
일 반 직	3급	1	1				일반	3급	1	1			
	4급	7	5	1	1			4급	7	5	1	1	
	5급	61	30	2	11	18		5급	<u>62</u>	<u>31</u>	2	11	18
	6급이하 소계	1,225	1,225					6급이하 직 소계		1,225			
	전문경력관 소계	2	2					전문경력관 소계	2	2			
별정직 계		4	4				1	별정직 계		4			
6급 상당 이하		4	4			6≣	6급 상당 이하 4 4						
연구직 계		1	1					연구직 계	<u>0</u> <u>0</u>				
연구사		1	1				연구사	<u>0</u>					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내역

○ 연구직(6급 상당)을 감하고 일반직공무워(5급)을 증할 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5급 29호봉	6급 27호봉	차 액
	(직원5급 평균호봉)	(직원6급 평균호봉)	(소요예산)
연간 인건비	78,215	69,960	8,255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12조제2항 단서 중 제1호에 해당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○ 연간 소요예산이 총 8,255천원으로 연 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하여 미첨부 함.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행정국 총무과 주무관 김승자
연 락 처	02-2670-3324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